

#. 이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원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영문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1조(허위진술 및 기만) 만약 피보험자가 이 보험 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은닉 혹은 허위진술할 경우 이 보험증권은 무효이며 또한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대하여 허위 혹은 기만서약은 손해발생의 전후를 막론하고 이 보험증권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2조(손해의 통지 및 증명) 피보험자는 이 증권으로 담보한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통고해야 하며 손해발생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기 기간내에 이재보고 및 사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보험증권은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조(손해사정) 피보험자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험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손해를 사정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증명서, 송장 기타 사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하여 보험증권의 원본을 분실하였을 시는 이의 부분이나 사본을 보험자가 정한 장소 및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평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손해발생시의 실제손해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손해발생시 이를 원상으로 수리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조(보험금 지불) 확정된 보험금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후 6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이 보험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운송자 또는 수탁자에게 이익을 주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6조(대위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이 지불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취득한다.

제 7조(회복) 보험금액은 추가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이미 지불한 보험금만큼

감소한다.

제 8조(1쌍 및 1조) 보험목적물에 일부 파손이 생길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손해측정은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쌍1조 총가액의 합리적 비율로 정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이를 전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9조(기계) 수개의 부분품으로 구성된 보험목적물에 파손이 생길 경우 보험자는 파손된 부분의 보험가격에 대하여서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조(손해방지 비용) 보험목적물의 감소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 그 대리인, 사용자 및 양수인이 당해 재산의 방위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함은 적법으로써 이로 인하여 이 보험의 노력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피보험재산을 회복, 구조 또는 보전키 위한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는 위부권의 포기 또는 위부의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부보된 금액에 비례하여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 11조(보험자에 대한 소송) 손해가 발생한 달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소송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이 보험증권이 발행된 지역의 국법에 의하여 상가 제한규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험금청구는 무효가 된다.

제 12조(손해평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보상액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쌍방이 각각 선택하는 이해관계 없는 전문평가인에 의뢰하여 결정하며 그들은 먼저 이해관계 없는 심판인을 선출해야 한다. 쌍방평가인은 동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심판에게 그들의 사정차액을 제출하여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그들이 선정한 평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평가인과 심판인에 대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 13조(해약) 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항시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이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관습적으로 단기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보험자는 5일전에 해약통지서를 발송 또는 우송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약되며 납부보험료에 대하여는 해약일자이후의 미경과 보험요율에 의거 환급한다.

제 14조(전쟁위험 부담보 조항) 전쟁, 외적행위, 대적 및 전쟁행위(선전포고 유무에 관계없이), 교란, 내란, 소란, 혁명, 모반, 반란 및 강제집행, 계엄령, 포위, 계엄령 선포, 국가의 압류, 몰수, 징발 국유화, 정부당국의 명령에 의한 파괴, 밀수, 불법수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보험증권은 본 증권에 열거한 약관 담보 및 부채조항 등 제규정으로 작성되었고 피보험자는 이 보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자 및 그의 대리인간에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에 합의하며 보험자의 직원 대리인 및 대표자는 본 증권의 약관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본 규정 이외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회사 대표자가 이 보험증권에 서명함으로써 본 계약의 체결을 선서함.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영문동산종합보험 특별약관

1) 장비부동 전위험담보특별약관

제 1조(담보조건) 이 보험증권은 이에 기재된 보험조건 및 약관에 의거 별첨 명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장비에 대하여 하기 위험을 담보합니다.

- ① 화재 및 낙뢰
- ② 폭발(증기기관 및 내연기관에 의한 폭발은 제외)
- ③ 홍수(수로의 범람을 의미함)
- ④ 지진, 교량, 독크, 상륙지, 배수로의 붕괴
- ⑤ 보험목적물 수송중의 충돌, 탈선, 전복
- ⑥ 도난(단,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면책금액에 의거)
- ⑦ 충돌, 탈선, 전복(단,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공제면책금액에 의거)
- ⑧ 좌초, 침몰, 화재 및 수상운송중의 공동해손 구조료

제 2조(면책조건) 다음 손해는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적재량초과로 인한 기계의 파손 및 손실
- ② 손멸, 자연소멸. 단, 보험목적물 고유의 위험이 아닌 한 파손 및 녹(산화)은 제외
- ③ 재산을 위탁받은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부주의로 기인한 손해
- ④ 고속도로용으로 자동차 및 운송용구에 대한 손실 및 파손 또한 계획서, 청사진, 설계도 및 지하와 제재소내의 재산
- ⑤ 건물의 영구적 일부분을 형성하는 재산의 손실 및 파손
- ⑥ 낙전에 의한 화재만의 손해이외에 발전기, 여자기, 램프, 스위치, 모-타 등 전기기구 및 전선등에 발생한 손해
- ⑦ 보험목적물이 인근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위험케 되거나 피보험자가 임박한 재난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재난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의 태만으로 인한 손해
- ⑧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혹은 공급자가 보상해야 할 손실 및 파손
- ⑨ 보험목적물의 필연적인 손해
- ⑩ 통제의 유무, 손실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또는 원인·근인 및 전부·일부를 불문하고 핵방사능, 방사능의 오염에 기인한 손해. 단, 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핵반응, 핵방사능 및 방사능 오염에 의한 화재의 직접적인 손해는 이를 담보합니다.
- ⑪ 침략, 외적행위, 적대 및 전쟁행위(선전포고 유무에 관계없이)내란, 동맹파업, 모반, 혁명, 소란, 군사 및 강제보권등 전쟁위험의 직접 간접에 의한 손해, 만

약 이재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가 상기 전쟁위험의 결과로 야기

되었는지 혹은 관련성의 유무를 증명해야 하며 허위증거를 제시할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⑫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및 관리하는 창고에 보험목적물을 보관할 경우 그 보험목적물이 빈번히 사용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특약조건)

① 타보험

손해발생시 유효한 타보험 증권이 존재할 경우 이 보험증권은 타보험증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내외의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② 공동보험

이재발생시 보험목적물의 가격이 보험금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자기가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 손해는 손해비율에 의거 보상받아야 합니다.

③ 차량의 정의

하기형의 장비는 고속도로용으로 제조된 차량 혹은 유사 운송용구로 간주하여 이 증권으로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기) 시멘트 운반을 목적으로 장비된 자동차, 쓰레기통 특수물체 및 오일 테리크 및 대소형 트레일러를 장비한 트럭. 단, 무허가 트랙터에 의하여 예인될 경우는 제외함.

④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피보험자가 계약 또는 협약에 의거 운송업자 수탁자 및 채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 증권은 무효입니다.

⑤ 절도

절도나 원인불명의 분실에 기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 _____ 혹은 기타 동가액의 공제면책적용에 합의합니다.

⑥ 충돌

충돌, 사태,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 _____ 혹은 동가액의 공제면책적용에 합의합니다.

⑦ 방제파손

기중기, 예인기, 동력 삽과 같은 장비가 방재붕괴로 인하여 , 동력발생했을 경우 동 장비 각 부분 가격에 10%의 공제면책율을 적용함에 합의합니다.

2) 육상운송부동담보특별약관

제 1조 이 특약은 ()에 의해 운송중에 ()를 포함하는 보험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한 위험에 직접생긴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담보위험은 과 같습니다.

제 2조 회사가 보상하는 책임은 ()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이 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매월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보험료는 회사의 보상책임에 따라 다음 ()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4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명세서를 매월 (-)일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명세서는 전월 (-)일부터 개시당일(-)까지의 1달을 기간으로 합니다.

제 5조 보험의 목적에 손실 및 손해가 생길 때 보험의 목적이 상품인 경우에는 이의 실제 가격을 보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장부 또는 서류는 피보험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회사가 정확한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또한 이 장부 및 서류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회사의 대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이 보험은 5일전 서면해약보고로써 회사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과 동시에 개시되는 위험은 보상되지 아니 합니다.

제 8조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 및 손해
2. 지연, 악화, 시장성 상실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해
3.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재산을 위탁받은 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
4.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기인하지 않은 한 파손, 곡손, 굵힘손, 자연소멸, 총해, 고유의 하자, 포장의 불완전, 운반부주의, 수침 또는 오염, 변색,

곰팡이, 상, 부패, 산, 증기, 맛의 변화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누손 및 감량손

실은 제외합니다.

5. 보험목적의 인근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위험하게 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재난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수단의 태만으로 인한 손해
6. 수탁자에 따라 거절 당하거나 반송된 탁송화물
7. 우송 또는 소포에 의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위험이 끝난 화물
9. 해일로 인한 직접 간접손해 또는 바람으로 인한 여부를 불문하고 비나 눈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동산을 수송하고 있는 건물이나 운송용구가 바람이나 우박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지붕벽에 손상을 입고 바람이나 우박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지붕이나 벽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온 비나 눈으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료조정특별약관

1. 잠정금액조항

이 약관에 규정되는 보험금액은 잠정금액으로 하며 잠정예치보험료도 이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그것은 이 약관에 의한 보험은 보험목적의 총보험가액을 부보하고 보상책임 한도와 이 증권기재의 타보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권 기재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되는 총가액을 기초로 보험료가 조정될지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지거나 타 보험에 의하여 보상됩니다.

2. 예치보험료조항

예치보험료는 수록된 각 소재지의 책임한도액과 각 소재지별로 별도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연보험료 총액의 ()%로 합니다.

예치보험료는 책임개시일에 당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잠정보험가액 × 연요율 × 예치율 % = 예치보험료

3. 가액통지조항

보험자는 매월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약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목적물의 정확한 소재지와 각 소재지별 목적물의 총가액 및 매월말 현재로 유효한 소재지별 보험계약 내용을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만약 보험계약자가 상기의 요건과 같이 당회사에 가액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증권상의 재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에 대해서만 손해발생전의 최종가액통지에 포함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4. 전액통지조항

이 증권하에서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발생전에 최종통지된 손해발생지에서의 가액(타 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을 공제함)이 가액통지 작성일자 현재의 그 소재지의 실제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 공제함)에 대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종 통지서를 접수한 후에 획득한 소재지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가액통지 조항에 규정한 것은 제외)도 같은 방법으로 분담하되 다만 통지서 작성일자 현재의 전소재지의 통지된 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을 공제함)이 실제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을 공제함)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5. 보험료 조정조항

이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는 잠정보험료이다.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보상책임하에 대한 실제보험료는 이 증권의 보험기간 만료일에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월평균 재고가액 × 연요율 = 실제보험료

타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금액을 공제한 후 (그러나 통지된 가액을 초과하지 않음) 각 소재지별 총잔존가액의 평균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평균가액의 보험료가 잠정보험료를 초과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당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잠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 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그 초과 지불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이 증권의 자동 복원을 위하여 보험금 지급액에 적용할 보험료는 본 증권의 보험기간내에 납입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증권만기일까지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당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추가 경과보험료로서 징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증권의 또 한가지 조건으로 이에 저촉되는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상에 규정된 조정보험료는 어떤 경우에도 부보된 재고품에 적용되는 이 증권상에 명시된 예치보험료의 2/3보다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6. 해지조항

어떤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증권발행 당시의 요율과 계약 해지일
까지 통지되는 월평균 가액을 기초로 한 보험료를 징구하며 보험계약 해지는
이 보험의 재조건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소재지별 보상한도액		
구분	장소	보상한도액 요율

5) 보세구역-항양본선인도간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담보내용) 당 회사는 보세구역에서 항양 본선 인도시까지 보험의 목적을 운
송하는 도중에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 침몰, 좌초, 교사 기타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부담합
니다.

제2조(위험의 시기 및 종료) 이 특약에 의한 담보기간 연장은 증권기재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의 목적이 보세구역에서 선적을 위하여 반출될 때로부터 시작하여 선
적항에서 외항선에 인도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느쪽이 먼저 발생하든
종료됩니다.

제3조(기타) 이 특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산 종합보험 보통보험
약관 및 기타 증권에 첨부한 특약조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6)상표특별약관

보험자가 책임을 저야 할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상품은 피
보험자의 동의없이 상표를 부착한 채로 판매처분 될 수도 없으며, 또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상표가 찍힌 용기에 담아서 처분될 수도 없습니다.

가치저하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상품의 원상표의 제거, 재부착 또는 수선하는데 발
생하는 제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7)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별표 4의 ㉔」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 (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될 때)시작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再賃貸)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 납니다.

3. (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일체(동산종합보험의 보험의 목적외의 물건을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4. (보험계약의 추가청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2에서 정한 회사의 보험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마다 지체없이 보험계약을 청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청약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 ② 보험의 목적의 품목 및 수량
- ③ 보험금액
- ④ 리스계약번호
- ⑤ 리스기간
- ⑥ 「임차인」의 성명
- ⑦ 보험의 목적의 설치장소

②위 ①의 보험청약에 지체 또는 탈루(脫漏)가 있었다라도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2에 정한 보험의 목적이 인도된 날로부터 7일(공휴일을 포함합니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보험의 청약에 탈루가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위험종료후라도 이의없이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위 ①, ②의 규정에 따라 매월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9에 정한 예납보험료는 예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정산합니다.

5.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① 리스계약 각 연도초 규정손실금액 전액

② 리스계약 각 연도중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할로 계산한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③ 7의 ①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안전장치에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② 오손, 찰손, 도료의 탈락 및 그 밖의 단순한 외관 손상으로 보험의 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손해

③ 재고조사 또는 검품시 발견된 품량부족 손해

④ 「별표1」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 폭발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적재하는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별표2」에 기재한 물건에 대하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폭동, 소요 또는 이와 비슷한 집단행동으로 생긴 손해

⑥ 「별표3」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

㉠구열, 찰상, 주름, 칠의 벗겨짐(도장, 페인트등) 요철손, 변색, 퇴색 또는 색바래므로 생긴 손해 그러나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온도, 습도의 변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보수의 불완전, 설계상, 재질상 및 제작상의 결함으로 생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가치하락 부담보)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

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 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위 ①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토목건설등의 기계등록) ①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시(임시 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외)를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실효됩니다.

②위 ①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예납보험료) ①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향후 1개월간의 보험료를 추산하여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위 ①의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0.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11. (보험조건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락여부를 회신합니다.

12. (기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특별약관 6의 4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① Roll속구 Felt, 스크린, Baffle-cross

② 전구, 진공관 기타 이와 비슷한 관구류

③ 토건, 광산, 운수, 농림기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래의 물건

㉠ 이대(履帶), 무한궤도, Cater pillar Tire, 베토판(케팅게이지앤드핏트 포함) 스카라화이야(싱크, 댕바론 포함), 파켓트(댕바론 포함), Roller, 기타 작업시에 항시 지면등과 접촉하는 부품

- ㉞ Fork, 호미, 칼, 찍게, 푸레이트, Liner
- ㉟ Drop Hammer, Diesel Hammer, Steam Hammer, Pile, Driver, 드릴의 비트, Cashing Tube, Belt, Rail, Screen

㊱ 재질(材質)이 도자기, 유리, 콘크리트, 벽돌, 고무, 카본, 나무합성수지로 된 물건

㊲ Wire Rope

「별표2」

특별약관에 6의 ⑤에 정한 아래와 같다.

- ① 대학에서 사용 관리하는 물건
- ② 텔레비전 중계차의 탑재기기

「별표3」

특별약관에 6의 ⑥에 정한 아래와 같다.

- ① 미술품
- ② 골동품

「별표4」

특별약관에 1의 ②에 정한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는 물건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정 옷트, 모-타보트, 통신 기타 주정
- ② 육상 콘테이너(금속재에 한함) 및 용기(이동형으로서 금속재로 된 것에 한한다)

8) 기기설치포괄담보특별약관

1. 보험의 목적

이 증권은 아래의 피보험자의 재산(후술하는 것을 제외함)을 담보한다.

- (1) 기계 및 장비(건축자재와 별개의 것)와
- (2) 건축자재(예:강재, 재목, 벽돌 및 모르타르)

「 」으로서 피보험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재산의 수선, 완성, 조립 및 개선과 관련된 기기설치를 위한 모든 물건과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특별히 책임을 떠맡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맺은 타인 소유의 유사한 재산

2. 책임의 개시

이 보험을 피보험목적물이 설치장소로 운송되기 시작할 때 개시하여 운송중과 설치장소에서 설치대기중 그리고 실제 설치, 조립, 시운전 동안에 계속 유효하며, 하기 조항 3(담보의 종료)에 따라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3. 담보의 종료

이 증권하의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담보는 아래의 경우에 종료한다.

- (1) 피보험목적물에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종료한 때
- (2) 피보험목적물의 설치 및 조립이 완성되어 만족스럽게 수락되었을 때
- (3) 보험증권이 만기가 되었거나 종료되었을 때
- (4) 건축자재(1조 (2)항)일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물의 일부분화되었을 때
- (5) 상기 조건중 어느것이든지 먼저 발생하였을 때

4. 담보대상지역

이 증권의 담보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한다.

5. 담보대상 제외물건

이 보험증권에서 아래의 것들은 담보되지 않는다.

- (1) 설치, 수리, 완성, 조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재산보완계획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설치할 의도가 아닌 연장 및 장비
- (2) 우송되는 물건
- (3) 화폐, 통화, 우표, 어음, 증서, 계산서, 차용증서, 신용장, 입장권, 금, 은 등 기타 귀금속
- (4) 이 증권하에서 담보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운영하는 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단, 이미 계약이 된 어떤 특정한 기기설치 목적에 사용키로 되어 확보된 특정한 물건은 제외
- (5) 수상 운송중인 물건
단, 내륙수로에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나룻배 위에서 육상운송구로 운송되는 동안은 제외한다. 그럴 경우에 보험자는 나룻배의 좌초, 침몰, 화재 및 충돌로 야기되는 직접적인 손실과 손해만을 공동해손과 구조비를 포함해서 보상한다.

6. 담보하는 위험

이 증권의 단 조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생적인 원인으로 인한 부분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손실과 손해의 「전위험」을 담보한다.

7.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

보험증권하의 면책조항에 추가하여 아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담보하지 않는다.

- (1) 파업, 공장폐쇄, 노동분규, 소요, 시민혁명 또는 이러한 사태나 소란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실 및 손해

(2) 지진, 산사태 또는 어떤 다른 지각변동으로 야기된 손실 및 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운송중의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화재, 폭발 및 연기에 기인되고 초래된 손해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3) 원인이야 어떻든 홍수, 지표수, 범람, 파도, 조수와 이러한 것들로부터 초래된 물보라 및 하수의 역수현상으로 야기된 손실 및 손실 즉 이런 것들이 야기된 원인이 홍수, 범람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천연 또는 인공호수, 저수지, 강 또는 다른 수역 경계의 파괴 또는 용기 그리고 천연수원에서 직접 흘러나온 물의 육상위에 저수와 또한 바람이 불었든 안 불었든 간에 상기 언급된 모든 것으로 야기된 손실 및 손실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운송중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화재, 폭발 및 연기로 기인된 잇따른 손해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4) 전세낸 운송구에 보관되지 않고 방치된 물건에 비, 진눈깨비, 우박, 눈 등으로 야기되는 손실 및 손해

(5) 보일러의 폭발, 파열로 인한 보일러에 대한 손실 및 손해

(6) 어떤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 당시나 그 직후 그 물건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취하여야 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태만으로 야기되는 손실 및 손해

(7)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 손해 및 비용

① 누구의 탓이든지간에 설계서 또는 여하한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디자인의 실수, 소홀, 결함

②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고용인에 의해서 기인된 피보험목적물의 건설, 설치, 수선, 조립상의 잘못된 작업 또는 실수, 태만, 결함.

③ 누구의 소치이든 불문하고 피보험목적물의 시운전상의 잘못된 작업 또는 실수, 태만, 결함 그러나 화재가 뒤따르고 그 화재로 인한 손실 및 손해는 보상됨.

(8) 고유의 하자, 잠재적인 결함, 마모, 녹, 부식, 습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 결빙, 곤충 또는 해충 등으로 야기되는 손실 및 손해

(9) 인공적 전류에 의하여 야기된 누전, 퓨우즈의 용해, 타전기적 장애 또는 방해에 기인된 전기장치 및 기기(배선포함)의 손실 및 손해

(10) 피보험자의 동업자, 직원, 종업원 또는 대리점이 고용관계로 일을 하든 그러하지 않든, 단독으로 또는 임대수송기구를 제외하고 부보물건으로 수탁하고 있는 제3자와 공모하든간에 그들이 자행한 사기적인 행위, 부정직한 행위 또는 범법행위로 야기되는 손실 및 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화재, 폭발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1) 담보위험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지연, 질의 저하, 시장성의 상실로 인한 손실 및 손해

8. 추가 조항

이 특약이 첨부되어지는 이 증권의 제조조건에 추가해서 이 보험은 아래의 제조조건들을 적용한다.

(1) 부속품

이 증권의 담보위험으로 인한 부보기계 또는 물품의 일부분에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상액은 이러한 부품의 대체 및 수선비용과 운송비 및 재정비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계나 물품의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표

단지 상표에 영향을 주는 담보위험으로부터 기인된 손상의 경우에는 이 증권 제조항상의 보험금액에 달하는 조건으로 상표를 수선하는 비용, 새상표비용, 상표부착비용등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구재보호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한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발효시 피보험자가 고지하였던 것과 같은 안전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4) 양도

이 보험증권은 보험자의 서면 동의없이 양도되었을 시에 무효이다

(5) 타보험

손실 및 손해가 발생했을 시점에 그러한 손실 및 손해가 타 보험에 부보되었거나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타보험에 부보되었을 경우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단, 만약에 이 보험이 없었더라면 보상이 가능한 타보험의 보상액 초과분은 예외로 한다.

9. 평가

보험자는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피보험 목적물의 시가와 노무비 기타 비용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동질, 동종의 물품으로 대체 또는 수선하는 비용액을 초과해서 보상하지는 않는다.

10. 보상한도액

배서가 없는한 다음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1) \$ _____ 각 설치장소 당

(2) \$ _____ 운송기간동안

(3) \$ _____ 타지역구내에 있어서

(4) \$ _____ 분손이나 전손, 구조비나 기타비용 또는 전체를 포괄해서

피보험자 성명 및 주소 :

보험기간 :

보험개시 시기: (년 월 일)

보험종료 시기: (년 월 일)

잠정보험료 \$, 보험요율 \$,

잠정보험금액 \$, 최저보험료 \$,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경우 분납보험료 \$ 는 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및 2년이 경과한 일자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 (개인, 법인 또는 조합의 해당란에 표시하십시오)

개인 법인 조합

이 보험증권에 명기된 약정 및 위에 기입된 잠정보험료에 따라 당사는 위에 그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를 보험기간중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담보합니다

단, 보험기간이란 위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에 적용되는 표준시간으로 위에 명시된 보험기간 개시일 정오부터 위에 명시된 보험기간 종료일 정오까지를 말합니다

제1조(보험의 목적) ①피보험자가 그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모든 금액

단, 이 조항은 수취계정 기록문서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금이 불능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② 미수금액의 차감계산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단, 이 조항은 상기한 손실 또는 손상에 의한 수금불능으로 발생한 미수금의 회수시까지 적용됩니다.

③ 상기한 손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추가 지출하게 된 통상 수금비용을 초과한 수금비용

④ 상기한 손실 또는 손상에 따라 수취계정 기록문서를 재작성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지출된 기타 경비

제2조(담보위험)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수취 계정 기록문서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의 전위험. 단, 다음 조항에 명시된 위험은 제외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위치

피보험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건물의 주소 :

피보험자의 사업장의 상기 건물내에서의 위치 :

피보험자의 사업내용 :

제4조(수취계정 기록문서의 보관) 이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계약은 수취계정 기록문

서가 상기한 사업장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상기한 기록문서는 비영업시간에는 항상 아래의 용기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에 의거한 손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상기 기록문서가 실제로 사용중에 있는 기간 또는 다음 제 5조에 명시한 사항에 있는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용기종류	제조업자명	분류표시	분류표시발행자

제5조(이송) 이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계약은 수취계정 기록문서가 손실 또는 손상의 긴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한 장소에 이송되는 기간, 그 장소에서 보관되는 기간, 또는 그 장소로부터 반송되는 기간중에도 유효합니다. 단, 피보험자는 상기한 이송후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는 미화 \$ 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 ① 과거 5년간 피보험자는 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종류의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② 과거 5년간 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을 취소한 보험자가 없으며,
③ 이 보험증권이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또 다른 유효한 보험증권이 피보험자에게 발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단,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특약번호 : (기입할 것)

이 보험계약의 수락으로써 피보험자는 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여기에 명기된 일체의 다른 보험계약은 이 보험계약의 발효시에 무효가 됨을 확약합니다.

면책조항

이 보험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근무중이든 아니든 또한 단독행위이든 타인과의 결탁행위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 그의 동업자 또는 간부사원, 임원 또는 수탁자에 의한 사기적인, 부정직한 또는 범죄적인 행위에 인하는 손해

- (2) 장부작성상, 회계처리상 또는 계산서 작성상의 오기, 탈루에 기인하는 손해
- (3) 손해의 입증이 기록문서의 감사 또는 재고조사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손해

단, 이 조항에서 제외되지 않는 수취계정 기록문서에 대한 손해가 감사 또는 조사절차와 별도로 피보험자가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보상 청구과정에서 증거보완을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절차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 (4) 화폐, 유가증권 및 기타 재화의 불법적인 수수, 획득 또는 지연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취계정 기록문서의 수정, 위조, 조작, 은닉, 파괴 및 처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손해
- (5) 전기 또는 자기에 의한 전자 기록 기기의 파손, 고장 또는 기록말소에 기인하는 손해, 단, 낙뢰에 의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핵반응, 방사선 또는 방사능오염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 또는 상태에 기인하는 손해
- (7) 다음과 같은 원인 또는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
 - (가)실제의 공격, 임박한 공격 또는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대항, 대전 또는 방어행위를 포함하여 평시 또는 전시의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가 다음과 같은 행위 주체에 의해서 행해졌을 경우. 즉,
 - ① (법률상의 또는 사실상의) 정부 또는 주권국가 또는 육.해.공군을 보유 또는 사용하는 권력기관
 - ② 육군, 해군 또는 공군당국
 - ③ 상기한 정부, 국가, 권력기관 또는 군당국의 대리인
 - (나)평화시이든 전시이든 불문하고 핵분열 또는 방사력을 사용하는 무기.
 - (다)모반, 반란, 혁명, 내란, 권력 강탈 또는 이에 대한 대항, 대전, 방어를 위한 정부의 행동, 검역 또는 관세 규제에 의한 압류 또는 파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몰수 또는 금수, 불법운반 또는 밀수.

보험조건

1. 정의

「사업장 구내」라 함은 제 3조 「사업장의 소재지 및 위치」란에 기입된 소재지에 있는 건물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상기의 영업목적에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료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회계월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월말일 현재의 수취계정 총액을 연불 계정과 외상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증권에 기입된 보험료는 단지 잠정적인 것입니다.

이 보험계약 발효일자로 부터 매 1년이 경과한 일자 및 이 보험계약의 해지시

에는, 그 이전의 12개월간의 수취계정의 월별 평균액을 산정하여, 이를 이 보험증권에 약정된 보험료율과 공하여 경과보험료를 산정하되, 상기한 평균액이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약정된 보험금액을 초과하든 아니하든 불문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경과보험료가 납입된 잠정보험료를 초과할 시에는 피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해야 하며, 미달할 시에는 납입된 보험료의 미경과분을 당사는 피보험자에 환급하게 되며 이러한 환급보험료는 이 보험증권에 약정된 최저보험료를 하회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험증권이 3년 만기로 발행될 경우에는 상기한 각 연도별 산정 및 정산은 보험료율,잠정보험료 및 최저보험료의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공동피보험자

1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기명된 경우에는 첫째로 기명된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피보험자 전원의 대표로 인정합니다. 임의의 피보험자에 의해 이루어진 지시하고 있는 정보 또는 사실은 피보험자 전원 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 또는 사실로 간주됩니다.

4. 검사 및 감사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취계정 기록문서를 보관하는 사업장 구내 및 용기를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보험기간중 또는 이 보험기간 연장기간 중 및 이 보험계약 해지후 3년이내의 기간중에 하시라도 피보험자의 기록문서를 조사 및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조사 또는 감사의 대상은 보험료 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이 보험의 담보 목적물에 관한 사항에 국한해야 하며, 또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미수금 수취계정의 기록문서에 관한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또는 당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의 당해 수취계정에 회수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회수금

보험금 지급후에는, 피보험자가 당해 수취계정에 의하여 보상받은 수금금액은 당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까지 당사에 귀속되며 따라서 당사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단, 상기 한도액을 초과하는 모든 수금액은 피보험자에 귀속합니다.

6.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의 의무

이 보험증권에 의거한 크레임을 야기하게 할 만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당해 손해에 관하여 즉시 당사 또는 그 공인대리점에 통보하며, 만약 당해 손해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경찰에게도 통고해야 합니다.

(2) 수취계정 기록문서가 손실 또는 손상된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상세한 손해증명서와 그 내용의 진실함을 확약하는 서약서와 함께 지체없이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보험자는 당사의 조사에 응하며 또한 이 뜻을 서면으로 확약하며, 또한 필요하면 이를 서약하며,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 기록문서 일체를 당사의 조사를 위하여 제출하며, 당해 손해 또는 크레임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와 협조하며, 미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7. 수취계정의 산출 및 공제액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으나 손해 발생일 현재의 미결제 수취계정의 총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총액은 피보험자의 월별통지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1) 손해가 발생한 회계년도의 전년도와 같은 월말의 모든 미결제 수취계정에 총액을 산출하며,
- (2) 손해발생의 바로 전 12개월간의 수취계정의 평균 월간 총계액 또는 피보험자가 당사에 월별 통지서를 제출한 기간중의 평균 월간 총계액과 전년의 같은 기간의 평균월총계액과 대비한 증감율을 산출합니다.
- (3)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과, (2)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비율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한 금액을 상기 손해발생 월말 현재의 수취계정 총액으로 협정합니다.
- (4) (3)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은 당해 월간 수취계정액의 통상적인 변동율에 따라 증감조정되거나 피보험자가 통지서를 제출한 최종월의 말일 이후의 이재 발생 상황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수취계정의 총액이 확정되면, 이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손실 또는 손상되지 않은 기록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수취계정액, 또는 피보험자의 수금으로 결제된 수취계정액 및 회수 불능으로 통상 발생하는 대손 예상액입니다. 모든 수입이자나 서비스 비용은 공제됩니다.

8. 타보험

손해발생시에 이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또는 기명되지 않은 피보험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체결된 타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당 회사는 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그 비례적 부분 이상의 지급을 하든지 분담을 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9. 보험금 지급

피보험 이익 및 손해의 충분한 증명이 당사 사무실에서 접수 및 수락된 후 30일 이내에 모든 정산 완료한 크레임에 대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당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3자로부터 회수했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당사에 대한 소송

당사에 대한 소송은 그 선행조건으로서 이 보험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알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한 기한이 이 계약을 지배하는 어떤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짧을 경우 가장 짧은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제한 기한이 여기 설명된 제한보다 우선합니다.

11. 부정표시 및 사기

손해발생 이전이든 또는 이후이든 불문하고 만약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또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이익에 관한 중요사실 혹은 사정을 은닉하였거나 또는 부정하게 표시하였을 경우, 또는 이들 사항에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사기 혹은 허위서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12. 대위권

이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개인 또는 조직체에 대해서 갖는 당해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위하며, 피보험자는 그와 같은 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문서 일체를 준비하여 전달해야 하며 또한 기타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발생 후 피보험자는 상기한 배상청구권의 확보를 해칠 만한 어떠한 행위도 이를 삼가해야 합니다.

13. 변경

대리인이 받은 통지 또는 대리인 혹은 기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는 보험계약 조건의 어떠한 부분을 포기 또는 변경시키지 않으며, 또한 이 보험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당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이 보험계약 조건은 포기 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단, 조건변경 사항이 이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특약에 의하여 약정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4. 양도

이 보험계약에 의거한 이익의 양도는 이에 대한 승인 사실이 이 보험증권에 명기될 때까지 당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또는 법정 관리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속 유효합니다.

단,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로 이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에게 우송한 계약해지 통고만으로 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5. 제정법의 준수

이 보험계약 조건중 이 보험증권이 발행되는 지역의 제정법과 상충되는 조항은 당해 제정법과 합치되게끔 수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보험증권의 제조항 및 조건은 이 보험증권에 부착된 약관의 제고항 및 조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1) 지정계정 면책 추가특별약관

원증권은 아래에 지정된 피보험자의 고객에 수취계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합니다.

지정고객명 :

주 소 :

9-2) 구외(構外) 담보 추가특별약관

아래의 사항을 약정합니다.

1. 원증권에서 제공되는 보험은 수취계정 기록문서가 구내를 벗어나 운송중일 때 또는 보관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구내에 임시로 유치중일 때에도 적용됩니다.
2. 이 추가특별약관하에서의 회사의 보상한도는 미화 불이며 이 한도액은 보험증권 제6항에 기재된 보상한도의 일부이며, 보상한도액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9-3) 지점구내 담보 추가특별약관

원증권에서 제공되는 보험은 수취계정 기록문서가 원증권 제3항에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피보험자에 의해 점유된 건물내에 있을 때와 피보험자에 의해 점유된 건물간에 운송중일 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추가특별약관하에서의 회사의 보상한도는 보험증권 제6항에 기재된 보상한도의 10%와 미화 250,000불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9-4) 기록문서 부분작성 추가특별약관

발행된 보험증권의 할인된 보험료를 조건으로, 피보험자 수취계정의 총액중 최소 %의 피보험자의 기록문서는 부분이 작성되고 향후에도 될 것이며, 아래에 지정된 건물내에 그러한 부분이 작성된 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보관 되어야 합니다.

9-5) 비통지 양식 추가특별약관

아래의 사항을 약정합니다.

1. 비통지 양식의 이 보험의 전제조건으로 피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제시합니다.

- (1)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수취계정 금액은 미화 불
 - (2) 지난 12개월 동안의 최고 수취계정 금액은 월의 미화 불.
 - 2.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험료」 조항은 삭제됩니다.
 - 3. 「수취계정액의 산출공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일 현재의 미결제 수취계정의 총액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1) 피보험자가 제시하여 증권의 일부가 된 월평균 수취계정액은 회계년도 중에 발생한 월별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액과 월평균 수취계정액과의 증감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 (2) 위와 같이 산출된 월별 수취계정액은 평균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특정월에 입증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해 조정되며, 1회계연도내에서 수취계정액의 통상적 변이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 그러나, 회사는 재화와 용역의 월평균 총매출액의 추이에 따라 조정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 의해 제시되어 증권의 일부가 된 월최고 수취계정액과 여기에 규정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여 드리지는 아니합니다. 수취계정액이 설정되었다 할 지라도 피보험자에 의해 수집되고 설정되지 아니하는 한 손상이나 멸실되지 아니한 기록으로 확인된 수취계정액과 피보험자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수취될 수 없는 악성채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모든 미경과이자의 용역비용은 공제됩니다

10) 보험료 및 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이 증권상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시 대고객 외환전신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 화로 회사에 납입할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은 보상금 지급시에 대고객 외환전신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 과 또는 ()에 상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기타 모든 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11) 책임한도액 특별약관

이 증권하에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매 사고당 ()에 대하여 US\$()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음에 합의함.

기타 다른 조건은 변동 없음.

12) 기초공제 특별약관

이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 회사는 매 사고당 손해액의 _____ 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상 열거된 조건 이외의 여하한 규정도 이 보험증권상의 합의사항, 부담조건, 고지사항, 면책조항을 변경하거나 방기하거나 또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

13) 공동보험조항 특별약관

아래 조항을 이 보험증권에 삽입시키는 것에 합의함.

아래 서명회사는 _____ 보험회사의 동산종합보험증권 및 동 증권의 제 사본에서처럼 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각 서명회사들은 각 회사에 할 당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동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승인하며 이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보상한도액

회 사 명

대 표 자

14)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전기위험부담보 추가약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여자기), 전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화재손해 (초손해를 포함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5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13.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5) 전기적사고 특별약관

우리 회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액에서 5만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증권외의 모든 조항에 따릅니다.

18) 기계적사고 특별약관

제1조

우리 회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지 아니한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언제나 양호한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
2.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과도한 운전이나 과하중(過荷重) 상태에 두지 않는 것
3. 보수(保守) 와 운전에 관한 법령 기타의 규칙을 지키는 것

제3조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증권외의 모든 조항에 따릅니다.

20) 태업 및 테러 면책조항

이 특약은 제공된 모든 담보하의 계약을 수정합니다 :

태업 및 테러 면책

우리는 태업 및 테러로 발생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한 태업 및 테러에 대한 방어에 대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손실이나 손해는 다른 원인이나 행사 동시 또는 손실에 어떤 순서에 기여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사보타주 및 테러는 사람, 조직이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자연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1. 그 다음을 준비하거나 다음에 포함을 포함합니다.
 - a.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 b. 위험한 행동의 위협 또는 허가
 - c. 허가 또는 간섭하는 전자, 통신, 정보, 기계 시스템을 방해 행위의 위협, 그리고
2.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적용 대상 :
 - a. 효과는 협박 또는 그 정부 또는 민간 인구 또는 세그먼트를 강요하거나, 경제의 모든 세그먼트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 b. 그것은 의도는 협박하거나 정부를 강요하거나, 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념이나 경제적 목적이나 표현하는 (또는 반대를 표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손해 및 손실의 크기에 관계없이 위의 1.항 및 2.항에 더하여 태업 및 테러 면책조항은 다음의 테러의 어떤 사건에 적용됩니다 :

1. 그것은 방사능 물질의 사용, 방출 및 탈출,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핵 반응 또는 방사능 오염을 포함합니다.
2. 그것은 분산 또는 병원성 또는 독성이 생물학적 또는 화학 물질의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됩니다.

3. 어떤 병원성 또는 생물학적 독성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이 유출되면, 그것은 파괴 및 테러의 목적이 이러한 물질의 유출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조항은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인해 신체 손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7)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8) 분실위험 확장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회사는 분실위험을 보장한다.

보험사고 협조조항

회사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동 보험증권상 아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피보험자는 담보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또는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b) 피보험자는 회사에 보험사고 또는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인지하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c)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보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손해조사인과 조사 및 사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 협조조항 (NMA2737)

회사는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동 보험증권 상 아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보험자는 담보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또는 그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된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재보험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b) 보험자는 재보험사에 보험사고 또는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인지하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c) 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통보된 사고와 관련하여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조사인과 조사 및 사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파업, 폭동 및 민간소요 면책조항

직접적으로 폭동 또는 민간소요에 가담한자, 동맹파업자, 공장에서 축출된 노무자 또는 노동소요에 가담한 자 및 정치단체를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갖지 않는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위험과 관련된 어떠한 합법적 지휘권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 또한 보상하는 책임을 갖지 않는다.

신규 취득 재물담보 특별약관

1. 담보범위

이 특약은 계약기간동안에 피보험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물을 원계약 및 배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이 특약이 담보하는 재물은 원계약과 배서에서 담보했던 비슷한 종류의 재물로 한정된다.

2. 조건

(1) 이 특약에서의 "신규취득재물" 담보는 아래의 내용의 것이 처음으로 발생할 때 종료된다.

(i) 원계약 만료시

(ii) 피보험자가 재물을 취득하고 ()일이 지난 후

(iii) 해당 재물이 보험자에게 보고되고, 원계약에 추가되었을 때

(2) 각 신규취득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취득가로 한다.

(3) 이 특약에서 보상의 한도는 원계약의 계약체결시점에서의 총 보험가입금액의 ()% 이다.

3. 보험료

피보험자는 신규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일 이내에 취득한 신규자산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자는 취득금액과 취득시점에 근거하여 비례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는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

4. 모든 원계약의 조건은 이 특약이나, 앞으로 다른 특약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전쟁, 정치적 위험, 테러리즘 면책조항

이 조항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군사행동(선전포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내란, 반란, 민중봉기에 이르거나 그 정도에 이르는 폭동, 군사봉기, 반란, 혁명, 권력찬탈, 계엄령, 몰수, 국유화, 징발 혹은 그로 인한 재물의 파괴, 정부와 공공기관에의 명령에 따른 파괴, 테러리즘, 이와 유사하게 통제, 예방, 진압 혹은 위의 것에 관련한 어떠한 방법의 것으로 인해 야기되거나, 발생되고 있는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 및 비용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테러리즘'은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혹은 이와 비슷한 목적의 것들 각각 또는 전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행위(협박의 것이든, 실제이든 관계 없이)를 의미한다. 만약 어떠한 재보험

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 입증의 책임은 원수보험자에게 있다. 이 조항이 무효하며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그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함을 유지한다.

누출, 오염 면책조항

해당 조항이 첨부된 증권, 슬립에 해당 조항과 반대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누출, 오탁, 오염으로 인한 손실, 피해, 비용은 담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그리고/또는 폭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출, 오탁, 오염에 의해 발생한 화재 그리고/또는 폭발'이 면책사항이 아니라면,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화재 그리고/또는 폭발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는 보험조건에 따라서 담보된다.

대위권포기 조항

회사는 임차자나 그의 대리인, 그의 고용인의 태만(중과실은 제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획득한 경우에 상법의 682조항과 718조항에 따라 동 권리를 포기한다.

상품 다수구매자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상품의 '다수구매자(이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② 구매자는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관리, 운영, 유지하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구매자를 위하여 행동하며,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 (개별적용)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별도의 보험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의 조건은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

피보험자의 추가, 해지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나, 각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구매일자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한정됩니다.

제4조 (보험료 정산)

보험계약자는 예상피보험자 및 보험가입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예치보험료를 납입한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① 매 월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추가보험료는 익월 ()일까지 회사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조건들은 이 특별약관의 조항들과 상충되지 않는 한 Inland Floater Policy 상의 보통약관을 따른다.

상기 담보는 동일한 보험이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공됨
상기 일반조항에 따른 담보에 앞서 이 Inland Floater Policy의 관련 각 부분별 특정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나의 사고 (72시간) 특별약관

회사는 지진, 분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제 또는 수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보장하는 위험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동일한 지진학적 또는 기상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고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시기는 보험기간중에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리위험 특별약관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환급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기간이 완료되고 미지급보험금이 종결된 후 손해율이 ()%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험료의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자동 복원조항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보험기간동안 유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발생한 손해액과 잔여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이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원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